



문서번호 : 21-09-공익인권변론센터-03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공익인권변론센터, 타투공대위,
화성식품노조 타투유니온지회

제 목 : [공동 보도자료] 타투이스트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및 면담요청

전송일자 : 2021. 9. 13.(월)

전송매수 : 총 12매

[공동 보도자료]

타투이스트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및 면담요청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 타투공대위, 화성식품노조 타투유니온지회는 2021. 9. 13. 11:00경 국회의장, 보건복지부장관 등에게 형사처벌로 발생하는 타투이스트들의 인권침해에 대한 적절한 보호초지를 요청하는 진정 및 긴급구제신청서와 면담신청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위 시민단체들은 해당 기자회견에서 타투이스트 변호인단의 발족 및 관련 활동을 소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3. 첫번째 발언자인 하태승 변호사(법무법인 여는)은 접수한 진정 및 긴급구제 신청의 취지와 내용을 밝혔습니다. 하 변호사는 타투이스트들은 노동자이자 예술가인데, 대한민국에서만 그저 범죄자로 전락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타투이스트들에 대한 처벌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에게 보건복지부장관,

국회의장, 대법원장에게 타투이스트들이 인권을 침해받지 않고 적법하고 안전하게 타투 시술을 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게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두번째 발언자인 곽예람 변호사(법무법인 오월)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 소속 20여명의 변호사로 구성된 타투이스트 변호인단을 발족한 사실을 알리며, 현재 진행중인 형사 재판의 주요 쟁점과 향후 변론 계획을 밝혔습니다. 곽 변호사는 타투이스트 변호인단은 국가인권위 진정에 이어 진행중인 형사재판을 공동 변론할 것이고, 위헌제청신청 및 헌법소원심판청구와 더불어 유엔 및 ILO 등 국제기구에의 진정 등에도 조력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세번째 발언자인 김형탁 사무총장(노회찬 재단)은 타투의 의미를 설명하며 타투의 범죄화를 비판했습니다. 김 사무총장은 "타투는 개인의 개성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시민적 권리"라며, 타투시술을 범죄로 취급하는 것은 결국 표현의 자유를 가진 모든 시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네번째 발언자인 김도윤 지회장(화성식품노조 타투유니온 지회장)은 타투이스트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방치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김 지회장은 타투이스트들은 합법적으로 납세를 하는 노동자이자 예술가임에도 그림(타투)을 그렸다는 이유만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게되는 현 상황을 비판했습니다. 김 지회장은 타투 합법화를 방치하는 행정부와 입법부와 1992년부터 타투를 처벌하는 판례를 이어오고 있는 사법부를 비판하며, "왜 일못하는 행정, 입법, 사법 3부의 영성함에 타투이스트들이 처벌받아야하는가"라고 질문했습니다.

마지막 발언자인 김유승 보건교육부장(하선식품노조 타투유니온 보건교육국장)은 타투시술을 처벌하는 판결과 타투에 대한 차별과 혐오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김 보건교육국장은 타투시술을 처벌하는 92년 판례로 인하여 문화 영역에서 미디어 출연자의 타투를 가리는 등 타투 그 자체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보건교육국장은 타투는 한 사람의 외모라며, 92년 판례로 인해

발생하는 차별과 혐오가 잘못되었음을 국가인권위원회가 인정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 타투공대위, 화성식품노조 타투유니온지회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늘 제기된 진정을 조속히 검토하여 긴급구제를 권고할 것을 기대합니다. 나아가 이를 통해 타투이스트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중단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5.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끝.

- ▣ 첨부자료1 기자회견 발언 순서 및 발언 취지
- ▣ 첨부자료2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및 긴급구제신청서 요약
- ▣ 첨부자료3 기자회견 발언문

2021년 9월 1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공익인권변론센터,
타투공대위, 화성식품노조 타투유니온지회

[별첨1] 기자회견 발언 순서 및 발언 취지

1. 기자회견 개요

- 일시 및 장소: 2021. 9. 13.(월) 11:00, 국가인권위원회 앞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공익인권변론센터, 타투공대위, 화성식품노조 타투유니온지회
- 기자회견은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거리두기를 하는 상황에서 발언자 1인이 각 순서에 발언하는 방식으로 진행

2. 발언자 및 발언 취지

- 발언1: 진정 및 긴급구제 신청의 취지 설명
 - 발언자: 하태승 변호사(법무법인 여는, 민변 타투이스트 변호인단)
 - 발언취지: 별첨2 요약본 참고
- 발언2: 타투이스트들에 대한 형사기소 사건 경과 설명 및 민변 변호인단 발족 경과
 - 발언자: 곽예람 변호사(법무법인 오월, 민변 타투이스트 변호인단)
 - 발언취지: 서울북부지방법원 등 하급심 법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주요 재판 경과, 사건의 주요 쟁점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등 공판 대응 계획, 변호인단 발족의 의미 등
- 발언3: 권리로서의 타투와 범죄화가 초래하는 영향
 - 발언자: 김형탁(노회찬재단 사무총장)
 - 발언취지: 시민적 권리로서 타투시술과 타투시술의 범죄화가 초래하는 부작용 및 부정적 영향
- 발언4: 타투이스트의 인권을 침해하는 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문제점
 - 발언자: 김도윤(화성식품노조 타투유니온지회 지회장)
 - 발언취지: 타투업 관련 법안을 방치하는 입법부 및 행정부의 문제점, 타투이스트들을 형식적이고 광범위하게 처벌하는 현 사법부의 문제점
- 발언5: 타투에 대한 차별과 혐오의 문제점
 - 발언자: 김유승(화성식품노조 타투유니온지회 보건교육국장)

- 발언취지: 당사자의 의사를 묻지 않은 채 타투를 가리거나 모자이크 처리하는 등 미디어 등을 통해 초래되는 타투에 대한 차별과 혐오의 문제점

[별첨2]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및 긴급구제신청서 요약

1. 기본사항

- 진정인: 전국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타투유니온지회, 김도윤 타투이스트
- 피진정인: 보건복지부장관, 국회의장, 대법원장

2. 진정취지

1.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진정인들을 비롯한 타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적법하게 타투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법률의 제정 추진 등 적절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2. 국회의장에게

현재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문신사법안 타투업법안 등 관련 법률안을 조속히 심의하여 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3. 대법원장에게

타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의료법」 제 27 조 제 1 항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5 조 제 1 호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타투시술이 위 각 규정의 의료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할 것을 권고합니다

4. 피진정인들에게,

수사또는 처벌을 받은 타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명예와 권리 회복을 위해 적절한 배상 및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3. 진정 이유

- 타투업 종사자들에 대한 형사처벌 실태
 - 타투업은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유망 직종이고, 세계적인 예술의 일종으로 평가받고 있음
 - 타투시술은 단순한 노동을 구성하는 것을 넘어 예술의 영역에 속함

- 타투시술을 받은 인구는 300만에 달하고, 20대의 경우 경험 비율이 25%가 넘어가는 상황임
- 그러나 현행 의료법 등은 타투이스트들의 타투시술을 범죄화하고 있음
 - 의료법은 의사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하고, 타투시술을 비의료행위라 하여 처벌하고 있으며(제27조, 제87조의2 제2항 제3호),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적용되는 경우 무조건 징역형을 병과됨(제5조 제1호)
- 고객들이 전액환불을 요구하며 타투이스트들을 고발하거나, 여성 타투이스트에 대한 성폭행, 성희롱이 발생하고 있는 등 더 큰 범죄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임
 - 전체 타투이스트들 중 25% 가량이 고객의 공갈, 협박을 겪은 경험이 있음
- 외국법제를 살펴보았을 때, 이슬람 국가를 제외하고 전 세계에서 비의료인의 타투시술을 형사처벌하는 국가는 찾아보기 어려움
- 타투이스트들의 기본권 침해
 - 비의료인의 타투시술을 범죄화하는 것은 헌법 및 국제인권법에 따른 타투이스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제한받고 있음
 - 타투시술에 따른 기본권의 제한은 타투수요와 변화된 법감정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 타투시술 자체의 행위반가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고,
 - 의료인 외에 비의료인의 타투시술을 전면 금지하고 범죄화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 볼 수 없으며,
 - 희박하게 발생할 수 있는 공중보건상의 위험은 위생교육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점, 관련 법안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는 점, 형사처벌이 과중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기본권 침해의 수준은 최소화되지 않고 있으며,
 - 타투시술의 현실적 수요와 범죄화에 따른 부작용을 고려했을 때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음

- 타투이스트들의 기본권 침해를 방치하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
 - 국가는 국제인권법상 보호 및 충족의무 또는 헌법상 기본권 보호의무의 구체적 내용으로 형사처벌로 발생하는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해당 법률을 폐지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의무를 부담함
 - 보건복지부, 국회, 법원 등이 법안을 마련하지 않거나 처벌을 지속하는 등 타투이스트들에 대한 부당한 형사처벌을 방치하는 것은, 마땅히 이행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타투이스트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임

4. 긴급 구제의 필요성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① 조사 대상 인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②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진정에 대한 결정 이전이라도 피진정인들에게 적절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음
- 타투이스트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 형사처벌에 따른 권리 침해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긴급구제가 필요함

[별첨3] 발언문

발언1: 진정 및 긴급구제 신청의 취지 설명 / 하태승 변호사

1. 민주노총 법률원 하태승 변호사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한 민변 소속 변호사 20명은, 타투유니온, 그리고 김도윤 지회장을 대리하여 국가인권위에 진정 및 긴급구제 신청을 합니다.
2. 타투유니온 소속 타투이스트들은 정당한 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새로운 유망직업으로 타투이스트를 선정하였고, 국세청은 최근 타투샵에도 사업자 등록을 할 것을 종용해 사업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타투이스트라는 직업은 통계청이 발간한 한국 표준직업 분류에도 등재된 직업. 엄연한 노동의 일종입니다.
3. 동시에, 타투이스트들은 세계적인 예술가입니다. 언론은 k-타투의 세계적인 위상을 극찬하고 있습니다. 오늘 진정의 주체가 된 김도윤씨 역시 세계적인 예술가인데요. 브래드 피트 등 월드스타 연예인도 타투시술을 간청할 정도로,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력과 미학을 자랑하는 월드 클래스 예술가입니다.
4. 이처럼 타투이스트들은 외국에서는 예술가이지만, 대한민국에서는 그저 범죄자로 전락되고 있습니다. 타투는 의료행위다. 따라서 비의료인의 타투시술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지금으로부터 29년전 대법원이 제시한, 납득하기 어려운 이상한 법리였습니다. 29년전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대한민국은 타투이스트들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특히 타투이스트들에게는 보건범죄단속법이라는 특별법이 적용될 수 있는데, 보건범죄단속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는 무조건 징역형을 병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계신 김도윤 지회장을 비롯한 조합원들, 당장이라도 기소되고, 징역형을 선고받는 것은 아닌지. 항상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5. 21세기 문명사회에서, 타투라는 정당한 노동과 예술에 대해 범죄의 낙인을 찍는 국가는 단 하나, 대한민국 밖에 없습니다. 이슬람권을 제외하고는 모든 나라가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장려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타투이스트들에게 면허를 발급하고, 위생상태를 감독합니다. 안전하고 창의적인 예술, 위생적이고 건강한 노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와 동일한 법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일본 역시 최근 최고법원 판결을 통해 타투이스트들을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6. 이제는 타투이스트들에 대해 가해지는 사법부의 야만이 중단되어야 합니다. 정당한 노동자를, 성실한 납세자를. 세계적인 예술가에게 더 이상 범죄의 낙인을 찍을 수 없습니다.
7. 오늘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요청합니다.
하나. 보건복지부 장관, 국회의장, 대법원장에게 권고를 해주십시오. 진정인들이 직업의 자유, 예술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고 적법하고 안전하게 타투 시술을 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해주십시오.
둘.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 타투이스트들을 만나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면담을 신청합니다. 타투이스트들을 만나 절박한 호소와 인권침해의 상황을 듣고 적절한 의견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법부가 만든 멈추지 않는 29년 야만의 사슬을. 국가인권위원회가 나서서 끊어주시기 바랍니다.

발언2: 형사사건 경과 설명 및 변호인단 발족 경과 / 곽예람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타투이스트들이 처한 어려움에 공감해주시고 이렇게 귀한 걸음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타투이스트들은 타인의 신고 또는 단속으로 발각되는 경우, ‘의료법’ 또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타투유니온 김도윤 지회장의 경우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의료법 위반의 혐의에 대하여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며, 같은 법원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다른 타투이스트에 대한 형사재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외 전국의 다른 법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형사사건의 주요 쟁점은 의료법 또는 보건범죄단속법에서 의료인이 아니면 할 수 없는 행위로 규정된 ‘의료행위’에 타투시술이 포함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료법은 의료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오롯이 법원의 판단에 개념 정의를 유보하고 있습니다. 타투는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하기 위한 의료적 목적과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장식적, 심미적, 표현적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예술행위입니다. 그럼에도 기존의 30년 전 대법원 판례를 그대로 따라, 의료행위라는 단어의 기본적인 상식적인 문언을 벗어나 억지로 이에 타투를 포함시킬 수는 없으므로,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변론의 기본 요지입니다.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투를 의료행위로 해석해야 한다면, 이는 타투이스트의 기본권인 직업, 예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또한 타투소비자들의 자유롭게 타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침해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로 의료법 27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며, 이번주 금요일 예상기로 1심의 마지막 공판 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서 진정요지를 통해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외국에서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타투시술을 했다는 것만으로 형사처벌을 하는 곳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어떤 타투이스트는 배우자의 나라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할 단꿈을 꾸고 있는 상황에서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고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게 되었습니다. 1심이 선고한 형이 확정되는 경우 최소 5년 이상은 배우자와 생이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타투를 할 수 있음에도 말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에서는 타투이스트들이 입고 있는 이러한 심각한 인권 침해 문제에 통감하였고, 이에 민변의 공익인권변론센터를 통하여 공동 변호인단을 모집 및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 공감하는 20분의 변호사들이 모여, 타투이스트들이 자유롭게 타투할 수 있는 권리를 찾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고, 그 첫 시작으로 이번 국가 인권위원회 진정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에 공동변호인단으로서 함께 변론할 것이고, 위헌제청신청 및 헌법소원심판 청구, 나아가 국제기구에의 개인진정절차까지 조력할 예정입니다. 앞으로의 활동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언4: 타투이스트 인권 침해를 방지하는 입법, 행정, 사법의 문제점 / 김도윤 지회장

42299.

통계청이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해 ‘타투이스트’들이 발급받은 정식 분류 코드입니다.

930025.

타투이스트들이 소득세를 낼 수 있도록 국세청이 사용 중인 코드입니다.

즉, 타투이스트라는 직업은 행정상 '일반 직업'이며, 세금을 낼 수 있고, 내도록 권유받고 있는 합법적 지위의 직업입니다. 2020년, 2월 27일 타투이스트들의 노동조합인 타투유니온이 설립된 후, 많은 조합원들이 정식 사업자로 등록하고 세금을 낼 수 있다는 사실에 고무되어 조합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합법화에 한 발을 내딛는 것이지만 무턱대고 응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 타투를 하면 처벌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행정부가 원하는 절차를 밟는다는 것은 '타투'를 통해 '영리 행위'를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타투 작업은 영리행위입니다. 하지만, 사법부는 타투를 하는 행위를 '단순 의료법 위반'과 '영리를 목적으로 한 의료법 위반'으로 나누어 처벌합니다. 전자의 경우는 벌금형이지만, 후자의 경우는 징역 2년이 최저형량입니다. 실제로 지난 4월에만 두 명의 조합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지금도 최저형량이 징역 2년인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으로 기소되어 재판 중인 조합원이 다수 있습니다. 이 화가들은 단지 그림을 그렸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게 될 것입니다. 저희는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기 위해 징역을 살아야 하는 우습다 못해 괴이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행정부.

보건복지부 장관은 2014년 타투 작업 행위의 합법화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또 현재 여당의 대선후보 중 한 명은 국무총리 시절에 타투의 법제화를 선언했지만, 2021년까지 타투 노동자와 직업을 보호하기 위한 업무는 단 하나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입법부.

입법부의 상식을 가진 일부 의원들이 2007년부터 15년 동안 타투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있지만, 정작 일을 해야 할 보건복지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과감한 직무유기를 통해, 필요한 법안을 심사조차 하지 않는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법부는 1992년, 타투가 의료 행위라는 낮부끄러운 판례를 만들고, 아니 일본의 판례를 그대로 베껴다 붙여 놓고는 30년간 고민 없이 유죄를 선고하고 있는 당사자입니다. 심지어 일본마저도 해당 판례를 이미 폐기했습니다. 맹자는 수오지심이 인간이 날 때부터 지니는 것이라 했는데, 도대체 어디에 두고 출근하십니까.

행정, 입법, 사법.

삼권이 분립되어야 한다는 민주주의 원칙이 너무도 잘 지켜져서입니까? 원칙도 없고, 부처 간 조율도 없이 각자가 따로 춤추는 국가 권력 앞에 타투이스트들은 직업의 자유를 잃어버렸고, 예술가와 전과자라는 너무나 다른 온도차에서 방황합니다. 왜 일 못하는 삼부의 엉성함이 타투이스트들에게 형벌이 되어야 합니까?

국가인권위 진정의 자격과 대상을 따져 볼 때, 저희 사례가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는 삼부와 다르게 본래의 목적인 인권을 위해 일하다는 상식에 대한 믿음이 있기에 이 자리 섰습니다. 국가인권위의 공감을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발언5: 타투에 대한 차별과 혐오의 문제점 / 김유승 보건교육국장

우리는 사회적 충돌이나 대립이 있을 때, 법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법치주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꽤 우수한 법치국가라 자부합니다. 이는 분명 제 삶에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제 직업을 제외하고는요.

제가 타투이스트라는 직업을 선택하고 처벌을 받는 것도 슬프지만, 더 슬픈 것은 이 영성한 모양새의 판례가 많은 사람들의 인식을 좀먹어, 상식을 상식이 아닌 것으로 바꿔놓는다는 것입니다. 타투가 의료 행위라는 판례가 30년간 우리와 공생한 결과, 꽤 많은 ‘착한 국민’들이 타투가 진짜 의료 행위라 착각하고 있습니다. 월식 날 달에 드리워진 둥근 지구 그림자를 보면서도 지구가 평평하다 믿는 사람들과,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기 위해 의사를 찾는 사람들 중 누가 더 나은 지능을 지니고 있을까요. 무엇이 멀쩡한 사람들의 사고를 망가트렸을까요.

이 한심한 판례는 문화영역 곳곳의 모습을 바꾸어놓았습니다. 그중 한 곳이 미디어입니다. 타투에 대한 어떠한 방송 규정도 없지만, 많은 방송들이 출연자의 타투에 피부색 테이프를 붙이고, 모자이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케이블에서 방영하는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라는 인기 경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경연에 등장하는 많은 댄서들이 자신의 개성을 뽐내는 타투를 하고 있습니다. 관행에 따라 출연자들은 피부색 테이핑을 해야했습니다. 그런데 기존과는 좀 다른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가리지 않고, 가리는 시늉만 합니다. 또 여러 개의 타투 중 하나를 가렸다면 나머지는 시원하게 드러냅니다. 관행에 대한 순응과 저항이 충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타투 중 어떤 타투만 차별을 받는 것일까요? 가엾은 타투를 선정하고 차별을 정당화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타투끼리만 차별을 한다면 좀 귀엽다는 생각도 듭니다만, 타투를 가려야하는 참가자들과는 달리, 심사위원인 보아는 타투를 가리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이 차별은 어떤 기준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일까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수준이 떨어지는 법적 판단이 문화의 수준을 한없이 망가트린다는 것입니다.

타투는 한 사람의 외모입니다. 92년 판례에 기인한, 미디어의 관행은 누군가의 외모를 차별하고 혐오함에 주저가 없는 수준 낮은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법적 기준도 없이 출연자의 외모에 테이핑을 하는 괴이한 과정에서 인권 감수성은 시나브로 거세되었습니다. 결국 법을 잘 믿고 따르는 착한 사람들은 법으로 인해 스스로를 저급하게 변질 시키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타투는 한 사람의 외모이고, 타투를 보여줄지 가릴지는 당사자의 의사로만 결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미디어의 뻔뻔한 관행에 무감각해지는 우리의 문화 수준을 되돌리는 방법은 잘못된 판례를 바꾸는 것뿐입니다.

92년도 판례 위에서 미디어의 사고기능이 망가졌고, 이는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과 혐오를 정당화시키는 핑계가 되어 주고 있습니다. 저는 국가인권위가 잘못된 것들에 대한 권한 있는 판단을 내려주시어, 국가인권위 본연의 역할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